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종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60

발의연월일: 2020. 11. 26.

발 의 자:김종민·김남국·김용민

박범계 • 박주민 • 백혜련

소병철 · 송기헌 · 신동근

최기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형사소송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간주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2호(종전의 제1호) 중 "불기소처분을"을 "불기소를"로 한다.

다만,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.

1.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부착명령의 집행) ① ~	제13조(부착명령의 집행) ① ~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
⑦ 제6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	⑦
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	
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사유로 구금이 종료되	
는 경우 그 구금기간 동안에는	
부착명령이 집행된 것으로 본	
다. 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 제1호 및 제2호의 경</u>
	우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
	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
	경우는 제외한다.
<u><신 설></u>	1.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한
	<u>경우</u>
1. 검사가 혐의없음, 죄가안됨,	<u>2.</u>
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<u>불기</u>	<u>불기</u>
<u>소처분을</u> 한 경우	<u>소를</u>
<u>2.</u> (생 략)	<u>3.</u> (현행 제2호와 같음)
⑧·⑨ (생 략)	®⋅⑨ (현행과 같음)